

<p>언어 監査를 施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各 常任委員會別로 作成한 行政事務 監査計劃書를 서울特別市議會委員會條例 第5條 第1項第1號가目的 規定에 의하여 우리 委員會에서 一括收合 整理하여 採擇한 후 本會議의 承認을 받고자 하는 事項입니다.</p> <p>이번 行政事務監査計劃書 承認의 件에 대해 그 主要內容을 概括的으로 말씀드리면, 監査期間은 11月 21일부터 11月 29일까지 9日間이고, 監査對象機關은 地方自治法施行令 第17條의3第1項第1號, 第2號 및 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所管常任委員會에서 選定한 80個 機關과 同法施行令 第17條의3第1項第3號, 第5號 및 第6號의 規定에 의하여 本會議 議決對象 機關으로 15個 機關이 있습니다.</p> <p>本 監査計劃書에 포함된 本會議 議決對象機關으로서는 財務經濟委員會 所管인 市政開發研究院, 生活環境委員會 所管인 서울綜合職業專門學校, 漢南女子職業專門學校 등 4個 機關과 保健社會委員會 所管인 서울特別市立보라매병원, 서울特別市立龍仁精神病院 등 9個 機關, 그리고 文化教育委員會 所管인 서울特別市教育廳 등으로 總 15個 機關이 되겠습니다.</p> <p>단, 地方自治法施行令 第17條의3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文化教育委員會의 서울特別市教育廳에 대한 監査는 1995年度 轉入金의 使用에 관한 事項 및 1995年度 初·中·高等學校 新·増築 및 各種 施設 建築事項 등 4個의 特定事案에 限定된 것입니다.</p> <p>監査委員의 編成은 별도의 特別委員會를 構成하지 않고, 所管 常任委員會別 所屬委員 全員이 監査를 實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事務補助職員으로서는 事務處 全 職員이 該當 分野別로 支援토록 하였고, 監査資料는 本計劃에 明示된 事項 및 그 關聯資料와 各 監査委員會 및 監査委員이 要求하는 資料를 所管 常任委員長에게 提出하면 所管 常任委員長은 書類提出 要求目錄을 收合하여 議長에게 送付하고, 議長은 이를 綜合하여 市長에게 通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各 監査委員께서는 書類 또는 資料要求事項을 별지 제1호서식인 書類提出 要求目錄에 記載한 후 所管常任委員長에게 95年 11月 4日까지 提出하여 주시고, 불가피한 事由로 追加要求 資料가 있는 경우에는 3日 前까지 市長에게</p>	<p>資料提出要求를 하여야 하므로 늦어도 5日 前까지 提出토록 하였습니다.</p> <p>監査結果의 報告 및 처리는 議會運營의  효율성 提高를 위해 監査結果報告書案을 各 所管 常任委員會에서 작성 채택한 후에 95年 12月 11日까지 運營委員會로 이송하여 주시면 各 常任委員會別로 이송되어 온 監査結果 報告書案을 運營委員會에서 一括整理 採擇한 후 本會議에 提出할 計劃입니다.</p> <p>기타 各 常任委員會別 監査日程 및 場所, 監査要領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本計劃書에 포함하지 않은 事項은 所管 常任委員會에서 채택한 行政事務監査計劃에 의거 施行토록 하였습니다.</p> <p>本 計劃案은 10月 27日 第81回 臨時會 第4次 運營委員會에서 出席委員 全員の 滿場一致로 채택된 바 있으며, 該當 常任委員會의 議決을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滿場一致로 議決하여 第4代 議會 開院後 첫번째로 실시하는 이번 서울시에 대한 行政事務監査가  효율적으로 進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는 바입니다.</p> <p>이상으로 95年度 行政事務監査計劃書 承認의 件에 대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p> <p>○議長 文一權 수고하셨습니다.</p> <p>그러면 방금 提案說明을 들으신 1995年度 行政事務監査計劃書 承認의 件을 議決하고자 합니다.</p> <p>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異議 없으시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p> <p>.....</p> <p>(參 照)</p> <p>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p> <p>1. 목 적</p> <p>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96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운영의 합법성,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고</p>
---	---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시정함으로써 자치입법기능, 예산심의기능 및 집행기관 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시키는데 있음.

-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내지 제6조
- 2. 감사기간  
○ '95.11.21(화)~11.29(수)-9일간

※관련법규

3. 감사대상기관

위 원 회 명	위 원 회 선 정 기 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본 회의 의 결 대 상 기 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제3호·제5호·제6호)
운 영	○ 의회사무처	
내 무	○ 감사실 ○ 내무국 ○ 민방위국 ○ 소방본부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재 무 경 제	○ 기획관리실 ○ 재무국 ○ 전자계산소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 시정개발연구원
생 활 환 경	○ 산업경제국 - 농촌지도소 - 서울특별시공업시험소 - 청소년직업전문학교 ○ 청소사업본부 - 난지도관리사업소	○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 ○ 상계직업전문학교 ○ 엘림직업전문학교
보 건 사 회	○ 보사환경국 - 보건환경연구원 - 서울특별시립동부병원 - 서울특별시립서대문병원 - 서울특별시립정신병원 ○ 가정복지국 - 노원부녀복지관 - 동부근로청소년회관 - 청소년사업관 ○ 지방공사 강남병원	(보사환경국소관) ○ 서울특별시립보라매병원 ○ 서울특별시립용인정신병원 ○ 삼육재활관(재활병원) ○ 서울정신요양원 ○ 충현복지원 (가정복지국소관) ○ 서울청소년회관 ○ 한국사회봉사회영아임시보호소 ○ 북부노인종합복지관 ○ 가정상담소

위 원 회 명	위 원 회 선 정 기 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본 회의 의 결 대 상 기 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제3호·제5호·제6호)
수 자 원 관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수도사업본부</li> <li>○ 수도기술연구소</li> <li>○ 수도사업소(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부, 서부, 동부, 청북, 북부, 은평, 강서, 영등포, 남부, 강남, 강동</li> </ul> </li> <li>○ 정수사업소(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암, 구의, 독도, 영등포, 암사, 보광동, 노량진, 선유, 신월</li> </ul> </li> <li>○ 하수국</li> <li>○ 한강관리사업소</li> <li>○ 하수처리사업소(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랑, 탄천, 가양, 난지</li> </ul> </li> </ul>	
문 화 교 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보관실</li> <li>○ 문화관광국</li> <li>○ 세종문화회관</li> <li>○ 서울시립대학교</li> <li>○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5년도 전입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li> <li>· 1995년도 초·중·고등학교 신·중축 및 각종시설 건축사항</li> <li>· 시설학원 인가·등록·신고 및 지도·단속 관련 사항</li> <li>· 기타 교육청 소관업무 또는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li> </ul> </li> </ul>
건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li> <li>○ 도로국</li> <li>○ 종합건설본부</li> <li>○ 시설관리공단</li> <li>○ 동부건설사업소</li> <li>○ 서부건설사업소</li> <li>○ 남부건설사업소</li> <li>○ 북부건설사업소</li> <li>○ 건설자재시험소</li> </ul>	
도 시 정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계획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원녹지관리사업소</li> <li>-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li> </ul> </li> <li>○ 주택국</li> <li>○ 도시개발공사</li> </ul>	
교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관리사업소</li> <li>- 차량정비사업소</li> </ul> </li> <li>○ 지하철건설본부</li> <li>○ 지하철공사</li> <li>○ 도시철도공사</li> <li>○ 교통방송본부</li> </ul>	

4. 감사위원회 편성				
위원회 별	감사반장	간 사	감 사 위 원	사무보조 직원
운 영	김수복	김홍규 김성호	김종래, 양경숙, 오광열, 우원식 정진우, 정태중, 정한식, 최형신 황인명, 송인회, 홍락원, 김영희 홍순철	양재대, 박찬봉, 선종길 김수진
내 무	오세근	김재경 김동수	김명곤, 김영준, 김재인, 김종구 김종래, 여정구, 정병팔, 정해순 고광철, 성성용, 이진행, 차성환 최광용, 경규복	정문효 강기성 손경숙
재무경제	문석진	정수화 이양한	곽순영, 김광순, 김신호, 김홍규 백남선, 양경숙, 이정희, 황인명 김상남, 김승건, 노재동, 박남식 김승자	안석수 박선영 이경숙
생활환경	김영강	민영삼 안병소	김기영, 김수복, 오광열, 우원식 이금라, 이성호, 전병만, 정진우 정태중, 최영운, 황정식, 박일남 김성호	이찬목 김옥연 이정수
보건사회	조재환	정진택 문용자	박덕기, 박시하, 박찬수, 유준상 이달원, 최종오, 최준화, 최창규 최형신, 홍승채, 문팔래, 정선순 홍월표	김남중 안형찬 최은희
수자원관리	민상금	황호순 유기종	고용진, 김명현, 나태균, 노태숙 송덕화, 신경식, 유종필, 이강욱 정복진, 송인회, 지창수, 최종덕 김천주	장봉만 안윤기 김에런
문화교육	안순덕	정한식 손복	김형근, 서재완, 양동기, 유대운 이선재, 이영순, 이재진, 임종화 허광태, 김을동, 어운경, 임정지 조상훈	윤병국 강영태 윤정희
건설	김석판	민연식 장정일	김성수, 노영석, 민경엽, 백성덕 양희선, 윤복영, 이자원, 장하운 정병권, 정재천, 지용호, 홍락원 홍순철	성태진 안길수 김일경
도시정비	김석호	김낙순 조순형 백의종	구철희, 김장주, 김주철, 박상근 박수환, 유덕열, 이강진, 이용부 김방림, 박찬국, 송종섭, 홍진구 이두학	송재경 이상래 김영란, 황은주

위원회별	감사반장	간사	감사위원	사무보조직원
교 통	이창근	김희갑 김영희	김영춘, 김형길, 박겸수, 이시영 이운중, 정병인, 조상남, 홍성용 황병오, 김성춘, 이지문, 이성구 이영춘	김태호 최종익 이혜숙

※의회 사무처장은 사무처 전 직원을 '95행정사무감사 기간중 행정사무감사 업무에 최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함.(근거: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

※의회사무처 직원은 본계획서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사무보조원(속기사, 녹취요원, 타자원 등 포함)으로 임명된 것으로 함.

5. 감사위원회별 감사일정 및 장소

위원회별	감사일정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고
	월일	시간			
운영	11.25(토)	10:00	· 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회실	
내무	11.21(화)	10:00	· 감사실	내무위원회 회실	
	11.22(수)	10:00	· 감사실	내무위원회 회실	
	11.23(목)	10:00	· 내무국	내무위원회 회실	
	11.24(금)	10:00	· 내무국	내무위원회 회실	
	11.25(토)	10:00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내무위원회 회실	
	11.27(월)	10:00	· 민방위국	내무위원회 회실	
	11.28(화)	10:00	· 소방본부	소방본부 회실	
	11.29(수)	10:00	· 소방본부	소방본부 회실	
재무경제	11.21(화)	10:00	· 기획관리실	재무경제위원회 회실	
	11.22(수)	10:00	· 기획관리실	재무경제위원회 회실	
	11.23(목)	10:00	· 재무국	재무경제위원회 회실	
	11.24(금)	10:00	· 재무국	재무경제위원회 회실	

위원회별	감사 일정		대상 기관	감사 장소	비고
	월 일	시 간			
재무경제	11.25(토)		· 전기관(부서) ※서면감사	재무경제위원회	
	11.26(일)		· 전기관(부서) ※서면감사	재무경제위원회	
	11.27(월)	10:00	· 전자계산소	전자계산소	
		14:00	· 시정개발연구원	시정개발연구원	
	11.28(화)	10:00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11.29(수)	10:00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생활환경	11.21(화)	10:00	· 산업경제국	생활환경위원회	
	11.22(수)	10:00	· 산업경제국 · 서울특별시공업시험소	생활환경위원회	
	11.23(목)	10:00	· 농촌지도소 · 청소년직업전문학교	생활환경위원회	
	11.24(금)	10:00	·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	생활환경위원회	
	11.27(월)	10:00	· 상계직업전문학교 · 엘림직업전문학교	생활환경위원회	
	11.28(화)	10:00	· 청소사업본부	생활환경위원회	
	11.29(수)	10:00	· 청소사업본부 · 난지도관리사업소	생활환경위원회	
보건사회	11.21(화)	10:00	· 노원복지관 · 동부근로청소년회관 · 청소년사업관	보건사회위원회	
	11.22(수)	10:00	· 서울청소년회관 · 한국사회봉사회영아임시보호소 · 가정상담소	보건사회위원회	

위원회별	감사 일정		대상 기관	감사 장소	비고
	월 일	시 간			
보건사회	11.23(목)	10:00	• 북부노인종합복지관 • 삼육재활관(재활병원)	보건사회위원회 회의실	
	11.24(금)	10:00	• 서울특별시립동부병원 • 서울정신요양원 • 서울특별시립정신병원	보건사회위원회 회의실	
	11.25(토)	10:00	• 충청복지원	보건사회위원회 회의실	
	11.27(월)	10:00	• 보건환경연구원 • 서울특별시립용인정신병원 • 서울특별시립서대문병원	보건사회위원회 회의실	
	11.28(화)	10:00	• 서울특별시립보라매병원 • 가정복지국	보건사회위원회 회의실	
	11.29(수)	10:00	• 지방공사 강남병원 • 보사환경국	보건사회위원회 회의실	
수자원 관리	11.21(화)	10:00	• 수도사업소(6) - 중부, 서부, 동부, 성북, 북부, 은평	수자원관리 위원회회의실	
	11.22(수)	10:00	• 수도사업소(5) - 강서, 영등포, 남부, 강남, 강동	수자원관리 위원회회의실	
	11.23(목)	10:00	• 정수사업소(9) - 광암, 구의, 독도, 영등포, 암사, 보광동, 노량진, 선 유, 신월	수자원관리 위원회회의실	
	11.24(금)	10:00	• 수도기술연구소	수자원관리 위원회회의실	
	11.25(토)	10:00	• 하수처리사업소	수자원관리 위원회회의실	
	11.27(월)	10:00	• 한강관리사업소	수자원관리 위원회회의실	
	11.28(화)	10:00	• 하수국	수자원관리 위원회회의실	

위원회별	감사 일정		대상 기관	감사 장소	비고
	월 일	시 간			
수자원관	11.29(수)	10:00	· 상수도사업본부	수자원관리위원회 회의실	
문화교육	11.21(화)	10:00	· 공보관실	문화교육위원회 회의실	
	11.22(수)	10:00	· 서울시립대학교	시립대학교 회의실	
	11.23(목)	10:00	· 세종문화회관	세종문화회관 회의실	
	11.24(금)	10:00	· 문화관광국	문화교육위원회 회의실	
	11.25(토)	10:00	· 문화관광국	문화교육위원회 회의실	
	11.27(월)	10:00	·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원 회의실	
	11.28(화)	10:00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회의실	
	11.29(수)	10:00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회의실	
건설	11.21(화)	10:00	·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	건설위원회 회의실	
	11.22(수)	10:00	· 도로국	건설위원회 회의실	
	11.23(목)	10:00	· 서부건설사업소 · 남부건설사업소	남부건설사업소 회의실	
	11.24(금)	10:00	· 동부건설사업소 · 북부건설사업소	북부건설사업소 회의실	
	11.25(토)	10:00	※현장확인 · 종합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	
	11.26(일)		· 자료정리		
	11.27(월)	10:00	· 종합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 회의실	
	11.28(화)	10:00	·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회의실	
	11.29(수)	10:00	· 건설자재시험소	건설위원회 회의실	
도시정비	11.21(화)	10:00	· 도시계획국	도시정비위원회 회의실	



위원회별	감사 일정		대상 기간	감사 장소	비고
	월 일	시 간			
도시정비	11.22(수)	10:00	· 도시계획국	도시정비위원회 회의실	
	11.23(목)	10:00	· 공원녹지관리사업소 ·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도시정비위원회 회의실	
	11.24(금)	10:00	· 주택국	도시정비위원회 회의실	
	11.27(월)	10:00	· 주택국	도시정비위원회 회의실	
	11.28(화)	10:00	· 도시개발공사	도시정비위원회 회의실	
	11.29(수)	10:00	· 도시개발공사	도시정비위원회 회의실	
교통	11.21(화)	10:00	· 교통국 · 교통관리사업소 · 차량정비사업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11.22(수)	10:00	· 지하철건설본부	교통위원회 회의실	
	11.23(목)	10:00	· 지하철공사	지하철공사 회의실	
	11.24(금)	10:00	· 도시철도공사	도시철도공사 회의실	
	11.27(월)	10:00	· 교통방송본부	교통위원회 회의실	
	11.28(화)	10:00	※현장확인 · 차량정비사업소	차량정비 사업소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는 해당 감사위원회의 사정에 의하여 그 의결로 변경될 수도 있음.

6. 감사시 착안사항

- '9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현황
- '95년도 예산집행 등에 관한 사항
- '9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현황에 관한 사항
- '96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 소관 감사위원회 및 기타 감사위원이 요  
구한 사항 등

(다음 페이지에 계속)

7.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자료 제출		
위 원 회 명	감 사 자 료	비 고
공 통	○'9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관한 자료(각종기금 포함) ○'9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95년도 예산집행현황(각종기금포함) ○'95년도 각종 민원(인·허가, 진정, 청원, 이의신청 등) 민원 처리현황(요지 및 처리내역) ○'95년도 각급 감사기관(국정감사, 감사원, 내무부, 중앙부처, 자체감사 등) 감사시 지적된 사항과 시정조치 결과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조례·규칙 등의 제정, 개정, 폐지 현황 ○'96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소요예산 현황 ○소관 감사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등	민원종류 별도 작성  감사기관 별도 작성
생 활 환 경	○'95년도 예산투자사업별 추진 현황	
건 설	○'94년도 각종 정책 및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94년도 국정감사결과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94년도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	
도 시 정 비	○'94년도 감사원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94년도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	
교 통	○'94년도 감사원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94년도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 ○행정소송 계류 및 패소사건의 판결문과 업무추진 과정에서 정비 필요성이 제기된 조례 현황	
8. 감사요령 가. 감사방법 (1)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자료제출요구, 감사자료확인, 현황 보고·청취, 시책질의 및 답변 등의 순으로 실시

<p>(2) 특히 필요한 때에는 문서확인 및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p> <p>나. 감사자료제출 요구</p> <p>(1) 감사를 위한 자료는 본계획에 명시된 사항 및 그 관련자료와 각 감사위원회 및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 함.</p> <p>(2) 각 감사위원이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별첨서식(서류제출요구 목록: 별첨1)에 기재한 후 소관 위원장에게 1995.11.4.까지 제출하되, 추가요구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3일전까지 시장에게 자료제출 요구를 하여야 하므로 늦어도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함.</p> <p>다. 증인 등의 출석요구</p> <p>(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보조기관과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의 장(부서장)으로 함.</p> <p>(2) 기타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수있는 관계공무원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범위로 함.</p> <p>(3) 소관 위원회에서 대상기관의 사무와 관련하여 출석·증인·진술하는 증인, 참고인 등</p> <p>라. 감사진행순서</p> <p>(1) 감사선포(위원장)</p> <p>(2) 위원장의 인사</p> <p>(3) 피감사기관 선서(별첨2)</p> <p>(4) 업무현황 보고·청취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보고·청취</p> <p>(5) 시책질의, 답변(현지확인, 증인청취)</p> <p>(6) 위원장의 감사종료 인사(감사결과 강평)</p> <p>(7) 감사종료 선언</p> <p>마. 감사대상 사무</p> <p>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소관 위원회의 소관사무</p> <p>바. 유의사항</p> <p>(1) 조사의 한계(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아니됨.</li> <li>·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수 없음.</li> </ul>	<p>(2) 이해관계인의 제척·회피(동법시행령 제17조의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참여할 수 없음.</li> </ul> <p>(3) 감사상의 주의의무(동법시행령 제17조의8)</p> <p>감사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할 주의의무 및 정당한 사유없이 비밀누설 금지</p> <p>(4) 감사공개원칙(동법시행령 제17조의9)</p> <p>감사는 공개하되 본회의·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p> <p>(5) 현지확인통보, 서류제출, 관계인 출석·증인 및 의견진술요구는 늦어도 현지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해야 하므로 늦어도 5일 전까지 의장에게 통보(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1항)</p> <p>9. 감사결과보고서(안) 작성</p> <p>가. 방 침</p> <p>(1) 감사결과보고서(안)은 각 위원회별로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채택</p> <p>(2) 감사결과보고서(안)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대상기관, 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등을 포함토록 함.</p> <p>나. 작성방법 및 절차</p> <p>(1) 각 감사위원에게 감사결과의견서(별첨3)를 사전에 배부</p> <p>(2) 감사직후 전문위원은 감사결과의견서 수합</p> <p>(3) 전문위원은 이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안)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p> <p>(4) 위원장은 감사결과보고서(안)를 위원회에 보고한 후 의결로 채택</p> <p>(5)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결과보고서(안)을 '95.12.11.까지 운영위원회로 이송</p> <p>(6) 각 위원회별로 이송되어 온 감사결과보고서(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수합·정리 채택한 후 본회의에 회부</p>
--	---

<p>(7) 본회의 의결</p> <p>10. 기타사항</p> <p>가. 본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소관 감사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함.</p> <p>나. 피감사기관은 감사자료 50부를 '95.11.13.까지 제출하여야 함.</p> <p>다. 감사자료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95.1.1.~'95.10.31. 기준으로 작성</p> <p>※첨부: 1. 서류(자료) 제출요구목록 서식: 별첨1(수록생략)</p> <p>2. 선서문(안): 별첨2(수록생략)</p> <p>3. 감사결과 의견서: 별첨3(수록생략)</p>	<p>게 된 것입니다.</p> <p>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參考하여 주시고, 滿場一致로 可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이상으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p> <p>○議長 文一權 수고하셨습니다.</p> <p>그러면 運營委員會에서 提案說明한 서울特別市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을 議決하고자 합니다.</p> <p>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p> <p>(「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p> <p>異議 없으시면 可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p> <p>(議事棒 3打)</p>
<p>5. 서울特別市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運營委員會 委員長 提案)</p> <p>(15時 47分)</p> <p>○議長 文一權 다음은 議事日程 第5項 서울特別市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p> <p>(議事棒 3打)</p> <p>運營委員會 金鍾來議員 나오셔서 提案說明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金鍾來議員 안녕하십니까? 運營委員會 所屬 國民會議 金鍾來議員입니다.</p> <p>서울特別市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p> <p>地方自治法施行令이 95年 7月 1日字로 改正 公布됨에 따라 關聯條項을 일부 整備하여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의 實效性 확보를 위해 證人出席 및 證言 등에 關한 同法施行令 規定上의 未備點을 補完하려는 것으로, 主要骨子는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時 出席要求를 받은 證人이 正當한 이유없이 出席하지 아니하거나 證言을 거부한 때 300萬원 이상 500萬원 이하의 過怠料 賦課 및 그 節次 등을 명시하고자 하는 事項입니다.</p> <p>本 條例案은 運營委員會의 本議員 外 1人이 書面으로 提出한 案을 第4次 運營委員會에서 審査한 결과, 禹元植議員 外 1人的 同意로 서울特別市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第9條第1項 중 “500萬원 이하의 過怠料를 賦課한다”를 “300萬원 이상 500萬원 이하의 過怠料를 賦課한다”라고 수정하여 運營委員會案으로 滿場一致로 채택하고 提案하</p>	<p>(參 照)</p> <p>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조 내지 제10조를 제10조 내지 제11조로 하고</p> <p>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제 9 조(과태료부과) ①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원이상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②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시장이 부과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6. 서울特別市自治區의財源調整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p> <p>(15時 50分)</p> <p>○議長 文一權 다음은 議事日程 第6項 서울特別市自治區의財源調整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p> <p>(議事棒 3打)</p> <p>內務委員會 崔光雄議員 나오셔서 審査結果를</p>